

2004. 4. 30(금) 10:00
제1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

조 례 심 사 보 고 서

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	1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

[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] [심 사 보 고 서]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- 제출일 : 2004. 4. 20.
- 제출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4. 4. 21.

다. 상정일자 : 2004. 4. 28.

(제10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)

라. 의안번호 : 제2004-13호

2.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정이유

-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농촌용수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수질오염방지 대책, 용수공급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).
- 농촌용수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사·관리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.

- 농촌용수구역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(안 제5조).
-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, 정기적 수질검사, 오염관측망 설치운영, 오염유발시설의 개선 등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6조).
-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과 필요한 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함(안 제7조).
-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, 변경,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, 구역,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일간지등에 공고토록 규정함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농촌용수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형식과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,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- 그러나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이 2000.7.27 개정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이유와
-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용수의 보전·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비용·관리비용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와

-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볼 때 농어촌용수계획의 수립 및 용수구역의 조사를 위하여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, 계획수립 및 조사방법과 시행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생략

5. 토론요지

- 생략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농촌용수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와 농촌용수의 장기 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, 농촌용수의 오염방지,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체제나 형식,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함.

8. 소수의견의 요지

- 생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생략